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2024. 07. 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한다.) 제1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원만히 이행하여 주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삶의 터전인 기본 재산권을 정당하게 보호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제3조 (간접영향권지역 범위)

간접영향권지역은 폐촉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일산와이시티와 윈스턴파크 1차/2차, 내곡동 일부지역을 범위로 한다.

제4조 (소재지)

본 협의체의 사무실은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15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사무동 건물내에 둔다.

제5조 (주민지원기금사업 수립)

위원장은 매년 2월말까지 주민지원기금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장(이하 “고양시”라 한다)과 협의한다.

제6조 (정관 개정)

정관 개정은 폐촉법의 개정 또는 정관 개정이 불가피한 경우 정기회의를 통해 개정한다.

제2장 위원

제7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 ① 협의체 위원은 총15명으로 주민대표, 지역구 시의원(당연직), 전문가로 구성하며 전문가의 경우 타지역 주민도 위원이 될 수 있다.
- ②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고양시장이 위촉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지원자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4. 7. 04>
- 6. 주민감시원 및 사무장을 그만두지 않은 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차기 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60일 전에 선출공고를 하고 임기만료 30일 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 등의 권리)

- ①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 ② 협의체에 참여하여 발의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 (효력)

이 정관은 민·형사상의 구속력을 가진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 ①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인
 - 2. 부위원장 1인
 - 3. 사무국장 1인
 - 4. 감사 1인
-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④ 감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 임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된다.
- ⑥ 임원은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즉시 그 자격이 상실되며, 제8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으며 해임 대상 임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7. 04>
- ⑦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위원의 해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
 - 2. 협의체 위원으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3.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때
 - 4.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5.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3회 이상 위원장에 통보 없이 불참한 때
6. 정기 및 임시, 임원회의의 내용을 위원장 및 위원회 승인 없이 외부 유출 한 때

제11조 (선출)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 및 감사는 협의체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 협의체 동의를 받는다.

제12조(협의체 의결사항 등)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협의체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을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04>
 1. 환경상 영향 조사
 2. 오염물질의 측정
 3. 주민감시원의 추천
 4. 전문위원의 추천
 5. 정관 개정안의 제안
 6.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고양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7. 간접영향권지역 주민의 500세대 이상이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8. 간접영향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9. 제10조 제8항의 위원 해임
 10. 기타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협의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5항에 의해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04>

제3장 회의

제13조 (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18시 30분)에 개최한다(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부득이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거쳐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1/3이상의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최소 3일 전에 회의목적 및 일시, 장소

를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제3항에 의해 회의를 소집요구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 대행은 부위원장, 구성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⑥ 회의는 협의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협의체 의결은 제12조 규정을 적용한다.
- ⑧ 협의체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사무국장이 **회의록(의결: 찬반기재, 제목과 주요내용 기재)**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서 출석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4. 7. 04>
- ⑨ 협의체 통지 방법은 온오프라인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할 수 있다.
- ⑩ 회의내용의 고양시 민원절차를 통한 공개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할 수 있다.
- ⑪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방청을 허용 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위원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경우 재선출)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사무국장은 회의사무를 주관한다.
- ④ 감사는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를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감사하여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회의)

- ① 임원회의는 제10조 제2항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때 위원장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정관 및 기타 규정에 의한 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2.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③ 임원회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위원 의무 책임 등)

- ①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관계 규정과 협의체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간접영향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 ② 위원에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다음의 한도액 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홍보활동비(수당)과 주민의견 수렴,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한다.
 - 1. 위 원 장 : 매월 400,000원
 - 2. 부위원장 : 매월 200,000원
 - 3. 사무국장 : 매월 150,000원
 - 4. 감 사 : 매월 150,000원
 - 5. 회의수당 : 회당 120,000원(당연직 시의원 위원은 지불하지 않는다.)

- 6. 전문위원 : 회당(2시간 이내) 200,000원, 초과 시 50,000원을 추가 지급
- 7. 성상조사 : 일당 150,000원(주민감시원 제외), 고양시 관내 및 반입 쓰레기

제17조 (사무보조 및 경비)

- ① 협의체에 사무보조로 사무장 1인을 둔다.
- ② 사무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운영경비 지출 시에는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적용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 ④ 활동경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당 지급 시 계좌를 통해 입금한다.
- ⑤ 경비 지출은 법인 및 직불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다.

제1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① 폐촉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고양시 관련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성한다.
- ②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③ 기타 수익금

제19조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범위)

- ① 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용 한다.
- ② 고양시 관련 조례 제17조 1항에 의거 100분의 5 범위에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비를 집행한다.
- ④ 냉난방비 지원을 당해 연도 기금총액의 최소 6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20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

-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한다.
-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투명하게 관리한다.

제21조 (회계연도)

협의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본 정관은 [2024.02.17.] 제정되었음. 시행 [2024.02.18.]

* 본 정관은 [2024.07.04.] 개정되었음. 시행 [2024.07.05.]